

나.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마련(제40조의2 신설)

1)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주거마련 등의 용도로 매월 저축을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지원 대상기관 및 범위 확대(제45조제3호라목 및 제46조제2항 신설)

1)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기능대학을 포함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2)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에게는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함.

라. 정착지원시설 내 예비학교의 입학연령 상향 조정(제47조의2제2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설치된 예비학교의 입학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높여 나이가 많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학습의 기회를 부여함.

###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부** **국** **민** **국** **민** **국** **민**

2014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 국무위원회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 대통령령 제25770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7호다목”을 “제1항제6호나목”과 같은 항 제7호다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달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전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를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로, “제안서”를 “그경우 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로 한다.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더 모으니 으로 간수 신선판

며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청탁 과정을 한

제37조 제3항 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39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5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제77조 제1항 제3호 중 “공사로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제77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6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8조 제2항 중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3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을 위한 공사의 분할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범위의 확대(제30조)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의 견적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나.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의 범위 명확화(제77조)

- 1)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공종(工種)을 분리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 개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및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헤 인**

2014년 11월 24일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농 립 축 산      이 동 필  
식 품 부 장 관**

**◎대통령령 제2577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